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## I 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1255호
2. 발 의 자 : 김기덕 의원
3. 발의일자 : 2020. 2. 4.
4. 회부일자 : 2020. 2. 12.

## II 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명시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,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고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도록 규정하고자 함.

## III . 주요내용

1.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(안 제6조제2항 신설).
2.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해 신고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하며, 관련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

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).

#### IV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
2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3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0년 2월 4일 김기덕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255호로 발의되어 2020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,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고시스템을 설치·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.

### 2. 주요 검토의견

#### 가.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

- 국가인권위원회의 “중증·중복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”에<sup>1)</sup> 따르면 중복장애<sup>2)</sup>학생이 학교에서 인권 침해 또는 장애 차별을 한번이라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의 40.8%, 학교 관리자의 56.3%, 학부모의 55.2%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, 그 밖에 언어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도<sup>3)</sup>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- 또한, 지난 2018년 서울시 관내 특수학교인 인강학교와 교남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장애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한 보호·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

1) 보도자료: 인권위, 13일 중증·중복장애학생 교육권 실태 발표 및 정책 토론(국가인권위원회, 2018.11.12.)

- 대상: 특수학교 교사 282명, 학교 관리자 87명, 학부모 369명 등 총 738명

2) 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장애가 두 가지 또는 그 이상 중복해 있는 경우임. 중도·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아동들은 중도의 정신지체를 나타내며, 운동장애, 의사소통장애, 시각 및 청각의 손상, 간질 발작과 같은 중복장애를 수반하고, 특별하게 고안된 교육적, 사회적, 심리학적, 의학적 서비스를 필요로 함. [출처: 네이버 지식백과]

3) 언어폭력(놀림, 비하, 욕설) : 교사 10.6%, 학교관리자 13.6%, 학부모 27.2%  
괴롭힘(과도한 장난, 따돌림) : 교사 10.1%, 학교관리자 13.9%, 학부모 21.0%

제기되어 왔습니다.

- 이에 국회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, 인권침해 신고시스템을 설치·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기 위하여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을 개정할 바 있습니다.<sup>4)</sup>
-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생각됩니다.

#### 나. 주요 조문별 검토

- 안 제6조제2항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안 제6조의2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신고시스템 구축·운영 및 인권침해 사건 조사에 대한 방법·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3조 및 제13조의2와 동일한 내용을 중복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‘삭제’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817, 2020.2.13.).

그러나 안 제6조제2항 및 제6조의2의 규정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중 교육감의 책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한편, 동 개정조례안의 부칙은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으나,

---

4)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[시행 2020. 12. 11] [법률 제16746호, 2019. 12. 10, 일부개정]

개정된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의 시행일은 2020년 12월 11일부터이며 동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신고시스템 운영에 관한 내용·방법·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칙의 경과규정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같이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.<sup>5)</sup>

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도 “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의 시행이 2020년 12월 11일”이라는 이유로 ‘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 시행’할 것을 수정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 -1817, 2020.2.13.).

**□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**

5)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

제13조(특수교육 실태조사)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·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대학의 장,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,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시행일 : 2020. 12. 11.] 제13조제3항, 제13조제4항, 제13조제5항

제13조의2(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사의 방법·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[시행일 : 2020. 12. 11.] 제13조의2

# 관계 법령

##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
[시행 2020. 12. 11] [법률 제16746호, 2019. 12. 10, 일부개정]

**제12조(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)** ① 정부는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2. 10.>

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. <신설 2019. 12. 10.>

[시행일 : 2020. 12. 11.] 제12조제2항

**제13조(특수교육 실태조사)**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·특수교육교원의 수급 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5. 12. 22.>

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5. 12. 22.>

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2. 10.>

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대학의 장,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12. 22., 2019. 12. 10.>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,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 12. 22., 2019. 12. 10.>

[시행일 : 2020. 12. 11.] 제13조제3항, 제13조제4항, 제13조제5항

**제13조의2(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**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사의 방법·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2. 10.]

[시행일 : 2020. 12. 11.] 제13조의2